

## 퇴직연금공단법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583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안호영 · 박 정 · 어기구  
이성윤 · 박홍배 · 이학영  
전진숙 · 박희승 · 임호선  
주철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른 현재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퇴직급여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의 관리·감독 업무 지원, 퇴직연금 사업자 관리 업무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감독을 규정함(안 제20조).
- 바.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퇴직연금공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4. 임직원
5. 이사회 의 운영
6. 사업 과 그 집행
7. 예산 및 결산
8. 자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11. 공고의 방법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관리·감독 지원
2.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3.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지원
5.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운용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7.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8조(퇴직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7조제2호 및 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퇴직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등)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급여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의 추천,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이사) ① 상임이사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1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3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4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지출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④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4조(잉여금 처리)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9조(업무 위탁)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세청,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조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벌칙)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은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이 법에 따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일체

2.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17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구센터 일체

제4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공단법」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으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 중 “상임이사”를 “기금이사”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퇴직연금공단법」에 의한 퇴직연금공단